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243

제출연월일: 2024. 3. 5.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지역 청년들의 취·창업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공간제공을 위해 조성한 청년디딤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취·창업 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청년디딤터 운영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○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(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제18조(청년 창업지원)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21조(청년센터 설치·운영 등)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

다. 위탁의 필요성

○ 청년디딤터는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활동 지원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·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로서

○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과 취·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 운영

라. 위탁사무 내용

○ 청년 취업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

○ 청년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

○ 청년디딤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
○ 그 외 청년디딤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

마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종사자
청년디딤터	학성로95-6 (성남동)	지하1층, 지상4층 (대지 148.26㎡, 건축연면적 427.71㎡)	2명 (바상근 센터장1, 실무자1)

구 분	시 설 구 성	면적(㎡)
지하1층	창고, 통신실	43.2
지상1층	운영사무실, 공유주방	93.0
지상2층	회의실	102.45
지상3층	청년기업 입주사무실(2인-3실, 4인-1실)	102.45
지상4층	청년기업 입주사무실(2인-1실, 4인-1실), 공유주방, 세탁실, 샤워실	86.61
위치도	

○ **위탁기간**: 2024. 7. 1. ~ 2026. 6. 30. (2년)

○ **수탁자 선정방식**: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○ **소요예산**: 연120백만원(구비)

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기본 조례 제21조(청년센터 설치·운영 등)에 민간위탁사무 대상 명시 ○ 청년 취창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단체에 재정보조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재원조달의 다양화(공모사업 선정 등)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절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
3. 경제적 효율성	○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○ 또한, 다양한 취·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 가능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입주기업의 매출, 취·창업 프로그램 참여도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 ○ 운영비 정산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○ 이용대상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, 청년 창업기업 및 취·창업 준비 청년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가능

☞ **종합의견** :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·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현장 경험이 많은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함.

3. 추진일정

○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2024. 3 ~ 4월

○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: 2024. 4월

○ 위·수탁 계약 체결 : 2024. 5월

4. 참고사항(관련법규) - 붙임

붙임1 근거법규

□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, 제18조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「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」제21조

제21조(청년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센터(이하 "청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
3. 청년의 취업·진로·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
4.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
5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
6.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채용, 보수,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구청장은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□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해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위탁기간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
2. 청소, 방호 등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